

취재원접촉현실과 인권

김병국
원광대 신방과 교수

I. 언론자유와 취재원 접촉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론적 선언으로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는 다른 법규와 학설 및 판례 등에 따를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현대 민주주의적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이 나왔으며 신문과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고 그 때문에 보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보도의 자유라 해도 문자 그대로의 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언론행위의 전 과정으로 보아 실제 매스미디어에 의한 뉴스의 보도는, 뉴스원에의 접근, 취재, 보도, 배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그 어느 것을 분리해도 완전한 뉴스보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취재라 함은 사물로부터 기사의 재료 또는 제재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며 취재의 자유라 함은 이러한 재료를 자유로이 얻어낼 수 있는 취재행위의 자유를 말한다.

전 펜실베이니아주 최고재판소 마이클 머스만노 판사는 「인쇄할 거리가 없는 신문이란 포도 없는 포도밭이고 나무 없는 과수원이고 잔디 없는 잔디밭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란 뉴스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 불가분의 과정중의 어느 한 부분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는 물이 없는 강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흔히 국민의 권리와 충돌을 일으킨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는 물론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보도가 불가피하게 국민의 킬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여기서의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은 보도를 위한 취재상의 자유와도 이런 문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신문이나 방송기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뉴스를 얻는 것이지만 뉴스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 매스미디어와 취재원과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언론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론의 대두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오늘날 윤리적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취재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언론과 사회 제기구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임이론의 관점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언론인과 취재원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취재원과 언론인과의 관계에서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힘의 문제이다. 예컨대 취재원이 정보의 조정을 포함하여 언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별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반면, 언론인의 취재원에 대한 이같은 능력이 결여되어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언론자유는 취재원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치권력에 의한 정보의 조정, 통제,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조정, 통제, 검열, 언론인 구속 등의 예는 정치권력과 언론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언론자유가 위협받는 경우이다. 반면 이와 반대의 경우는 언론인에 의한 취재원에 대한 첩보가 우려되고 따라서 언론의 윤리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자유 의 현대적 변용도 강조되는 바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언론 혹은 언론인과 사회 각 기구 혹은 취재원 간의 힘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연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양자간의 힘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를 점유하는 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극히 일부밖에는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있고, 역으로 알 권리를 내세워 일반인, 특히 유명인 등에 관한 사적정보를 상세히 수집·처리·제공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또 정보관리 독점층과 결합하여 소비정보의 홍수와 관리정보의 빈곤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대중을 문맹화하고 불리한 정보의 은폐, 유리한 정보의 유출 등으로 정보 및 여론조작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의 특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민주사회 내에서 언론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수행토록 보장하자는데 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자유는 취재·보도의 전 과정에 걸친 자유가 방해없이 단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재원에의 접근도 그 과정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매스미디어에게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된 곳에 매스미디어마저도 접근할 수 없다면 국민은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으로 기능론적 입장에서이다.

위와 같이 취재자유를 헌법상 권리내용으로 인정하여도 매스미디어가 취재원과 접촉하면서 또 다른 보호가치인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내용을 보면 제 10 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 제 17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 18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조항은 모두 명예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이다. 또한 제 21 조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언론과 관련한 인격권의 침해는 크게 명예훼손과 사생활권 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하 본 논문의 주제인 취재원정 측 현실과 인권에 대해 사건기사취재, 취재원 접촉과 취재윤리,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고찰한다.

II. 취재활동과 사건기사취재

일반적으로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과학 등 각 담당분야별로 분담된 취재대상을 중심으로 취재활동이 행해지는데 기사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담당 출입처의 기자실(출입기자실)을 근거로 취재활동에 나선다. 그럴 경우우선 홍보관계자와의 접촉에서부터 취재는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보면 (품격)의 5항에서 「기자는 각 출입처에서 취재자유와 보장을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결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자들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 취재·보도활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기자단과 같은 기자들간의 조직이 그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기자실 운영 실태를 보면 획일적 보도 등 사실상의 보도통제 및 지난해 보사부·여수시청에서의 촌지파동 등 역작용이 많다.

오늘날과 같이 언론인의 취재 활동의 상당 부분이 각종의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었을 경우 언론인은 취재원의 홍보요원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출입처에서 기자들끼리 기자회나 클럽 같은 조직을 갖는 것은 미국이나 서방 여러나라에도 있는 일이지만 그들의 경우는 대부분 같은 기자실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친목이나 연락만을 위한 모임인데 대해 우리나라의 것은 다분히 배타성이 강한 조직으로 내부적으로 개선의 소리도 높았지만 아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자단의 회원은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들이 모든 보도기관에 개방되어야 할 기자실과 그 시설을 독점하고 뉴스원과의 접촉도 적당히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자단의 내규나 약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명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의 취재도 제약받게 된다.

둘째 기자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취재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취재의 경우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재유형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기자들이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중점적으로 접하게 되는 부서는 물론 사건 사고수사를 전담하는 수사부서이다.

범죄 사건의 발생은 독자나 정보원, 제보에 의해 아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자단이 담합으로 일정한 뉴스를 억제하거나 조정하여 뉴스통제에 이용되는 수도 있다. 또 비밀히 기자단의 회원들끼리 맺어진 약정이 개별적인 취재를 억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기사의 취재에 있어서도 물론 기자실을 중심으로 한 취재는 위와 같은 폐단이 있다.

사건기사란 범죄사건보도를 말하는 신문 용어이나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파출소의 보고를 통해 경찰서 상황실과 형사계 당직 데스크에 접수된다.

범죄수사의 경우 수사책임자, 홍보담당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경위, 영장집행, 사건처리 등 수사전망에 관해 정식발표를 할 수 있으나 사건기사 취재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수사당국의 발표를 기다릴 수만 없어 독자적인 취재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다른 모든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건 취재에 있어 당국의 발표사실만 충실하게 보도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복잡한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주의가 되면 소위 발표 저널리즘에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층보도나 조사보도를 게을리하고 독자적인 개성있는 지면제작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신문은 여럿 있어도 거의 같은 모양의 개성없는 지면의 신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상 특히 사건기사 취재에 있어서는 흔히 수사상 비밀이 앞서기도 한다.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서 수사관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인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법 등을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공개요구를 거부하는 수가 많다. 게다가 더욱 활발해진 각 기관의 홍보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오히려 기자들의 취재원에의 접근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자들이 당국발표를 보완, 확인하는 취재활동과 아울러 아예 독자적인 취재에 나설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이 경우 기자는 사건관련자들과 직접 만나고 또는 사건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실을 파악, 사실을 보도하여야 한다.

범죄 사건 취재에서 기본적으로 기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대체로 나누어 ① 가해, 피해자와 그 주변 ② 현장상황 ③ 범행동기 ④ 범죄의 성격 ⑤ 경찰수사 과정 등이다.

이것은 취재의 원칙적인 순서이지만 서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보통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순서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취재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가능한 최대량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경력, 전과 유무, 가족관계는 물론 가정환경, 성격까지도 취재해야 한다. 시간여유가 있을 때 가족 개개인과 업무상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취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떤 경우든 사건의 핵심이다. 범죄 자체가 흔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건 관련 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건의 비중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물론 사건현장과 주변을 직접 가서 살살이 취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또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목격자는 대개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로부터 거의 수사적인 태도로 탐문취재하여 관련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사건기사 취재야말로 기자로서 가장 활발한 취재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며 자연 취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와 부닥치는 일이 많게 된다. 특히 범죄사건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는 우리 관념으로는 어떤 의미로든 명예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자연 이들은 매스컴에 등장되기를 원하지 않고 반면 기자는 언론의 권위를 내세우며 이들과 접촉, 취재활동을 하려 하므로 이러한 취재원과의 접촉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빈발하게 된다.

III.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격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언론에 공정한 보도활동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가 있으며 언론은 취재를 위하여 취재원과 접촉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에서의 논점은 첫째 명예훼손적 사항이나 사생활적 내용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가 및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가 취재대상이 될 수 있는 가이며, 둘째 취재활동에 있어서 방법론적 정당성의 유지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취재의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언론보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공익목적에 위하여 취재 보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원리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완전한 사생활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진실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피보도자의 사회적 지위 및 그 사적인 행위의 내용, 정도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언론자유 내용으로서 취재, 보도의 자유가 인정되고 또 이런 활동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정보접근권리 언론에게 인정된다면 사생활적 내용이나 명예훼손적 사항에 대하여도 한정적으로 정보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익적 사항으로서 진실에 해당되는 것 및 진실이 아니지만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보도되었다 하여도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볼 때 언론기관에 정보접근권리 인정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역시 취재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진실성, 공익성 문제를 따져 명예훼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몰라도 사전에 명예훼손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접근 허용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범죄수사과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청문회 등과 같은 곳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접근을 차단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하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보접근을 막지 않도록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점 취재활동 영역이 대상과 범위면에서 실제상의 보도보다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기자가 직무상 얻게 된 타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보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둘째 취재활동에 있어 방법론적 정당성 문제를 인권과 관련하여 보면 주로 뉴스취재를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이다.

뉴스를 얻기 위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주로 「침입(intrusion)」을 말하는 것인데 침입은 개인의 주거지로의 침입뿐만 아니라 취재대상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로 볼 수 있다.

기사취재를 위해 때로는 거주자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그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한 법적 한계로 보면 주거침입이 된다. 남의 은행구좌를 본인의 동의없이 탐지한 경우나 도청기를 장치한 경우 또는 망원렌즈의 카메라로 건너편 아파트의 내실을 찍은 경우도 침입이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은 엄격히 말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물론이나 언론기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개인, 더군다나 사건관련자일 경우 법적으로 대항할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도기관에 취재의 자유(취재권)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반국민에 대해 취재에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문·방송은 어디까지나 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법률상 그에 대한 협력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 취재활동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권력이 그것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억제하는데 있다. 즉 국가기관이 취재원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함부로 비밀로 지정하거나 하는 경우 취재의 자유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이익을 위한 기사취재를 위해 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함께 그 자료와 관련되는 관계인물을 만나 확인해야 되고 관련인사의 책임있는 설명을 직접 들어야겠지만 이 경우 그 대상이 일반 개인일 경우는 물론이고 공적 인물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미국판례로 공직자나 그 밖의 유명인들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뉴스가치의 원칙」 (Principle of newsworthiness)이 있는데 이는 공인의 사생활이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뉴스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그것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라도 면책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가치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문제의 공표가 ①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이고 ② 원하든 원치 않든 공적 인물에 관한 사항이고 ③ 공적인 기록에 관한 것이면 뉴스가치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미 국에서 해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 원칙의 전제하에 사건기사취재에 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보도기관을 대표해서 정보원에 접근할 권리가 부여된 기자일지라도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기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속보도에 치우친 나머지 졸속 취재로 오보를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항상 진실보도에 전념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전력하는 보도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야 될 것이다.

IV. 인권침해와 취재윤리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주역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총국장 밴 브래들리는 부정과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사명인데 언론이 속임수나 비윤리적인 취재방식을 서슴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 바와 같이 언론 스스로가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스스로 엄청난 자가장착이라 하겠다. 부정과 불의를 캐고 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론인이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하고 부정에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언론의 윤리성이 강조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언론단체나 언론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한결같이 기자가 실제의 취재·보도활동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재와 관련해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으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기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특권리나

특혜를 남용해서도 안된다는 것 등이다. 이같은 윤리적인 문제, 특히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크리스티안스(C. Christians) 등은 「미디어 윤리」에서 첫째 취재원과 언론인의 관계에서 예의와 공정성(decency and fairness)이 취재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둘째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될 정보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외설성이 뉴스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방어하여야 한다는 세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없이 언론자체의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실제 많은 기자들이 속임수나 그 밖의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까지도 이용해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이 흔히 있어 언론 윤리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한편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재된 뉴스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뉴스로 기록에 남은 예도 적지 않다. 대체로 서류를 절취한다거나 남의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한다거나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는 기자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 밖의 부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속임수나 부정한 수단을 써서 취재를 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과 언론인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의 주요 부분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집약되는데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의 유형은 첫째 조용한 삶에 대한 침해, 둘째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공개, 셋째 개인에 대한 부정확한 공표, 넷째 특정 목적을 위한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의 남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등은 취재과정 또는 편집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취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치열한 취재경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 전자 장비들이 취재에 동원되는 경우 취재의 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언론계 자체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로 들어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게리 하트 후보의 후보사회를 불러온 여성관계에 대한 마이애미 헤럴드지의 취재는 기사의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도 과연 언론의 보도가 정당하였는가 하는 보도의 질에 관한 논란도 일으켰지만, 이와 아울러 취재방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미국 언론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취재방식으로 흔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장이나 속임수에 의한 취재와 매수나 유혹에 의한 취재, 도청장치나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등이다. 그 중 기자로서의 신분을 속이고 위장하여 취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NBC와 ABC 방송의 뉴스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신문기자연맹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제 4항에서 「뉴스·사진·서류 등을 입수할 때에는 항상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미국신문윤리강령의 원칙성명은 (공정)의 장에서 기자가 「품격의 공통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전문언론인협회(SDX)의 강령도 「기자들은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상대하게 될 사람들의 위신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규정 (제 17항)을 두어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이나 법원에서도 그것이 권리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언론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의 경우 법에 의한 구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언론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러면서도 언론인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언론기관이 갖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재방식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둔 윤리강령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로서 E. 구드윈은 「속임수나 부정한 수단을 써서 취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내용으로 기사취재권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 즉 진실을 캐내려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과 국민 각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지키려는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수는 없으며 또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의 속성상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 만큼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인 특히 취재기자들이 품격을 유지하며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인격존중의 태도를 가질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점 범죄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에서의 불법의 과실은 역시 불법이라는 격언이 기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의 취재현실에서 법적 규범 아닌 전문직 윤리로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대 법대. 서울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언론학)
- 저술 「매스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가」(역)
- 현재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